

대구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가합20474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홍

원고보조참가인신용보증기금

피고1. C 주식회사

2. 주식회사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형, 조정아

변론 종결2024. 5. 30.

판결 선고2024. 7. 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은

18,894,277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D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은 493,936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과 채무자 회사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원고 보조참가인은 2020. 11. 6. 주식회사 A(이하 '채무자 회사'라 하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채무자 회사가 F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 47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같은 날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F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1) 피고 C은 2021. 5. 11.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4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채무자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1. 5. 11. 접수 제2788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D은 2021. 12. 10.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5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채무자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 D, 채권최고액 756,450,09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1. 12. 13. 접수 제6265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보조참가인의 대위변제

채무자 회사에 2021. 12. 31.경 사업장 권리침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2022. 11. 7. 채무자 회사를 대위하여 F은행에 대출원금 475,000,000원, 이자 8,784,246원 합계 483,784,248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라.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및 원고의 소송수계

- 1) 원고 보조참가인은 2022. 6. 9.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인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 2) 채무자 회사는 2023. 4. 28. 대구지방법원 2023하합110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23. 6. 12.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변호사 G이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변호사 G은 이 법원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7조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고, 채무자회생법에 기한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각 변경하였다.
- 3) 변호사 G은 2023. 8. 18. 파산관재인 사임 신청을 하여 2023. 8. 29. 위 사임 신청을 허가받았고, 원고가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에 따라 원고는 2023. 9. 19.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원고 보조참가인은 2023. 9. 20. 이 사건 소송에 보조참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 경과

- 1) F은행의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으로 2023. 4.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2024. 3. 20.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 2) 위 법원은 2024. 4. 26.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인 피고 C에게 4순위로 18,894,277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 D에게 4순위로 493,93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3) 원고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카합10010호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이 지급받을 각 배당금 채권에 대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24. 4. 17.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금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2,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인권의 성립

가. 부인의 대상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가 포함되므로(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는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인권 성립의 전제로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 보조참가인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이 2022. 11. 1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보조참가인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참조).

2) 채무자 회사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 가) 적극재산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목적물의 경우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을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H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F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채무자 회사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제1부동산 내에 소재한 기계기구가 있었고, 그 가액은 합계 4,676,378,970원인 사실1), ②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제1부동산 내에 소재한 기계기구에 관하여 설정된 F은행의 2020. 7. 23.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742,000,000원인 사실, ③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제1부동산 내에 소재한 기계기구에 관하여 설정된 H의 2021. 12. 9.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326,9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회사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의 적극재산은 1,934,378,970원(= 4,676,378,970원 - 2,742,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의 적극재산은 1,607,478,970원(= 4,676,378,970원 - 2,742,000,000원 - 326,900,000원)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자 회사의 매출채권 및 13건의 특허권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을 제2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의 거래처 원장 중 외상매출금 계정에 2021. 5. 31. 기준 4,806,021,900원, 2021. 12. 31. 기준 3,320,169,271원이 계상된 사실, 채무자 회사가 2018. 10. 17.부터 2021. 8. 12.까지 중국에 소재한 거래처에 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각 수출신고한 사실, 채무자 회사가 I에 2021. 4. 30. 915,000,000원, J에 2021. 5. 10. 2,400,000원, 2021. 5. 27. 9,349,000원, 2021. 12. 9. 2,990,000원, K에 2021. 4. 30. 10,000,000원, L에 2021. 12. 8. 480,000원, 2021. 12. 13. 90,000원, 2021. 12. 15. 5,000,000원을 각 공급가액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사실,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까지 11건의 특허권을,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까지 1건의 특허권을 각 등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채무자 회사의 매출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원고 보조참가인,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가 보유한 각 특허권의 가액을 산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채무자 회사의 매출채권 및 특허권을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극재산

채무자 회사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 소극재산으로는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계 6,449,753,721원(= M은행 450,000,000원 + F은행 4,299,418,000원 + N은행 200,000,000원 + O은행 232,335,721원 + 한국산업은행 500,000,000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8,000,000원 + P 660,000,000원) 상당의 대출채무, 거래상대방인 피고들, H 등에 대하여 합계 5,044,309,817원 상당의 외상매입금 채무, Q(R)에 대하여 419,859,880원의 용역비 채무, S에 대하여 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 총 11,918,923,418원의 채무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채무자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들의 사업 계속 목적 담보제공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채무자 회사는 자금난에 처하자 피고들로부터 부품을 계속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 등이 아니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다)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C이 채무자 회사에 공급한 물품은 베어링, 볼스크류, 엘엠가이드, 전기모터 등이고, 채무자 회사의 피고 C으로부터의 매입 규모는 2020년 상반기 65,255,520원, 2020년 하반기 45,533,884원, 2021년 상반기 59,256,670원인 사실, ② 그런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채무자 회사가 피고들을 포함하여 H, T, U, V 등 54개 업체에 대하여 부담한 물품대금 채무 합계액이 5,044,309,817원에 이르는 사실, ③ 채무자 회사는 2021. 5. 11.경 위 업체 중 피고 C에 대해서만 자신의 적극재산 중 가장 규모가 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피고 C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235,936,342원인데 반해, H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326,900,000원인 사실, ④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부터 2021. 12. 31.까지 피고 C이 채무자 회사에 공급해준 물품은 합계 19,011,542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채무자 회사의 사업 규모와 피고 C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내역과 공급량 등에 비추어, 채무자 회사가 2021. 5. 11.경 채무자 회사에 대한 물품공급업체 중 피고 C에 대해서만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면서까지 피고 C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필요성 내지 효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2021. 5.경 당시 피고 C으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피고 C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는 235,936,342원이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3억 원에 불과하여, 통상 채권원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기존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 외에 향후 외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품대금채무까지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채무자 회사는 2021. 7. 21. 피고 C에 20,000,000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거래한 물품대금 상당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설정 이후에 발생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피고 C와의 거래가 감소하였고 곧이어 거래가 중단됨으로써 담보제공에 상응한 계속적 물품공급의 실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채무자 회사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피고 C으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물품대금채무 및 장래의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기 보다는 단순히 기존 물품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 D은 2021. 7. 25.경까지 채무자 회사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그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자 회사와 피고 D 사이에 2021. 11. 16. 채무자 회사가 피고 D에게 물품대금 672,250,17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던 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21머198호), ② 피고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D은 채무자 회사가 위 조정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은 향후 공급될 물품의

대금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마쳐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피고 D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거나 그러한 담보제공행위가 계속적인 사업을 위해 불가피하고 유효한 수단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을 용인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 보조참가인은, 채무자 회사와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을 용인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1. 12.경 피고들, 원고 보조참가인, 기술보증기금, H, T를 당사자로 한 합의서 초안이 작성된 사실, 위 합의서 초안에는 '채무자 회사 소유 이 사건 제1부동산(토지, 건물 및 기계기구 포함)의 처분(매각, 경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 포함)시 합의대상 근저당권자(피고들, H, T) 및 근저당권 설정예정자(원고 보조참가인, 기술보증기금)를 제외한 선순위 채권을 우선 변제한 후 잔여액에 대해서 위 합의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 설정예정자들은 근저당권의 설정순위에 불구하고 잔여액에 대해 같은 순위로 근저당권 설정최고액 내에서 실제 채권액을 기준으로 안분하기로 합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합의서 초안에는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그 기재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설령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권은 파산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파산자의 행위를 부인함으로써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함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파산자와 그 상대방 간의 이해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닌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이 부인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채무자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을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 1) 항변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21. 4.경 및 같은 해 8.경 채무자 회사의 간담회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미수금을 회수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모든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으며, 그 외에도 채무자 회사의 기술력과 특허권, 대금 결제 내역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자 회사의 사해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 2)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등 참조).
- 3) 구체적 판단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가 2021. 4.경 협력업체를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다수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던 점, ② 피고들은 채무자 회사의 간담회에서 채무자 회사의 미수금 현황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는바, 위 간담회를 통해서 피고들 이외에도 다른 채권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하여 피고들의 미수금채권을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회수할 수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사해의사 추정을 반복할 만한 선의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가.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파산관재인인의 부인권행사로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부인의 대상이 되는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있는 경우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그 배당금채권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4. 4. 26.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인 피고 C에게 4순위로 18,894,277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 D에게 4순위로 493,93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결정으로 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각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각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성경희

판사정소영

판사이호선

별지

1) 위 가액은 2022. 4. 29.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가액이나, 그 시기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도 위 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추인된다.